전력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2024. 1.

한국전력공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별첨1]에 따르고 평가점수의 계산은 세부사항별로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참여기술인 : 50.0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5.0점

○ 신용도 : 10.0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0점

○ 업무중첩도 : 10.0점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별첨1]

제3조(사업수행실적의 증명)

① 사업수행실적의 증명은 [별첨1]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제출한다.

② 국외에서 수행한 실적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주재국 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해당 용역의 용역내용, 규모, 도급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해당 용역 참여 신청자가 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별첨 2]와 같다.

제5조(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해당 용역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해당 용역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로 작성하여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후 입찰 전에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전 ①항의 제한에 부가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것을 취소한다.

제6조(입찰참가적격자의 선정)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자격심사, 기술능력, 부정당업자 여부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득한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지)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사실을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동일)을 통하여 개별 공지한다.

제8조(국가계약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건설기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9조(업무중복도 제출자료 공개 및 감점)

①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용역참여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기한내 접수분만 유효함)

② 발주청은 제1항에 의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오류, 누락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을 보고받아 확인하고 업무 중복도에 해당되는 진행 중인 용역의 오류, 누락사항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단, 제시된 사실을 고려한 용역참여 신청업체의 재평가결과 감점이 발생되었을 경우로 한정)

※ 용역참여 신청자의 업무중복도는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제10조(기타)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별첨 1]

1. 자격심사

평가항목	세부심사기준			참가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세부평가항목	평 가 결 과	비 고	
①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 가 제한기간 중인지의 여부	□ 입찰참가 제한 기간 중임	□ 평가중단	※공통사항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 전차용역실적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입찰참가 제한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재정상태 · 가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단, 지반조사업체는 재정상태만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실시설계 참여사의 공동도급업체 중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참여기술인 실적 평가는 지분율을 반영하지 않음 -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공동수행(지분참여 포함)한 경우, 수행부분(지분이나 비율 또는 실적)에 대해서만 수행실적으로 인정
		□ 입찰참가 제한 기간중이 아님	□ 평가계속	
② 재정 상태	□ 해당 용역사업자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상태 또는 금융의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의 여부	□ 가능하지 않은 경우	□ 평가중단	
		□ 가능한 경우	□ 평가계속	
③ 사업 수행자격	□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수행자격 보유 여부	□ 보유하지 않음	□ 평가중단	
		□ 보유함	□ 평가계속	
④ 조건의 충족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 설계시행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부분의 구조분야, 토질·지질 분야, 전기부문의 전기설비분야의 신고를 필하고 국가기술 자격법상의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발송배전기술사 를 모두 보유한 업체}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 2개 기술(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과 전기전자분야 1개 기술(발송배전)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자와 지반조사시행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직접생산확인서(발급일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부문의 토질·지질 분야의 신고를 필한 자}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 1개 기술(토질 및 기초)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자간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 공동도급[실시설계 공동이행자(2인 이내)와 지반조사 분담 이행자(1개사)간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입찰시에는 대표자(실시설계 참여자중 출자지분이 과반수이상인 자)가 참가	□ 조건 미비	□ 평가중단	
		□ 조건 충족	□ 평가계속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세부심사기준</th><th></th><th>참가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th></tr>
<tr><td rowspan="2">①
참여기술인</td><td rowspan="2">□
사업책임기술인</td><td></td><td></td><td>[15]</td><td rowspan="2">1. 제출서류
○ 참여기술인 능력(경험) 득점집계표(서식-5)
○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서식-6)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행 경력확인서
○ 발송배전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위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경력확인을 우선으로 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한 경력확인서도 유효
○ 해당분야자격증 사본
○ 발주처발행 경력확인서(노선의 총연장, 터널의 총연장, 공법 및 단면적 또는 총사업비, 터널사업비 기재 : (서식-24)
○ 전력구 기본설계 참여기술인 현황(서식25-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서식-29)
2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구조분야 또는 토질·지질(기술사법에 따른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로 함
○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자격에 발송배전을 포함하여 3개분야로 함
○ 분야별 책임기술인는 1인 1분야에 한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해당분야에 겸임할 수 없다.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단, 발송배전분야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은 제한없이 인정한다.
3. 평가내용
○ '해당분야'라 함은 전력구 터널 및 전력구외의 터널(양수발전소, 지하철, 도로, 철도, 통신구, 공동구, 상하수도, 수로, 유류비축 등) 관련실적(개착공법 및 광산터널 제외)
○ 터널인정 규모는 구조물내경 Φ1.6m 이상 또는 구조물 내공단면적 2㎡ 이상 터널 관련실적에 한함
○ 터널의 설계경력 및 실적은 직접적으로 터널 설계참여 및 실적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발주처의 확인요청에 입찰참여자는 협조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터널실적이 아닌 경우 터널실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건수는 최근 10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1건공사(용역)에 다수의 터널이 있는 경우 가장 긴 터널의 연장을 적용(예 : 1개 노선에 왕복터널이 있는 경우 연장이 긴 한개 터널의 연장으로 적용)</td></tr>
<tr><td></td><td>㉮ 등급

㉯ 경력</td><td>해당분야 특급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이하
3.0 | 1.5 | 0
단, SOQ, TP대상 용역의 경우 기술자격(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기술사) 보유기술인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한다.
□ 환산경력
15년 이상 | 15년미만 10년이상 | 10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4.0 | 3.6 | 3.2 | 2.8 | 2.4
□ 해당분야 경력기간 산정
○ 설계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 전력구터널 설계경력100%, 전력구 외 터널의 설계경력80%, 해당분야 이외 설계경력30%,
○ 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회사 임.직원으로 전력구터널의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경력 80%, 전력구외 터널의 시공 및 건설사업 관리경력 60%
단, 터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전력구 터널의 설계, 감독, 또는 사업관리 관련경력 100%, 전력구 외 터널의 관련경력 80%
○ 발주청의 임.직원으로 전력구 터널의 설계.감독 또는 사업관리 관련경력100%, 전력구 외 터널의 관련경력80%, 그 외 관련경력 60%.
○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행 경력중 터널경력사항은 해당발주처 발행 경력증명서나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첨부 또는 발주처의 터널존재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터널로 인정되며, 발주처 확인 외의 기타 객관적인 방식으로 터널존재 확인시에 한하여 해당 경력기간의 30%를 터널경력으로 인정한다.</td><td>(3.0)

(4.0)</td></tr>
<tr><td></td><td></td><td>㉰ 실적
□실적건수는 최근 10년간 수행한 유사 용역 준공실적에 한함</td><td>□ 환산실적
10건이상 | 8-10건미만 | 6-8건미만 | 4-6건미만 | 4건미만
5.0 | 4.5 | 4.0 | 3.5 | 3.0
8.0 | 7.2 | 6.4 | 5.6 | 4.8
□ 평가
○ 환산건수 = Σ건당(용역단계별계수 × 용역사업별계수 × 터널연장별계수)
□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 용역단계별 계수
- 실시설계(기본·실시설계 통합발주 포함) : 1.0
※ 전력구 설계용역의 기본설계 : 0.5(기본설계 심의 후 결과보고가 끝난 경우, 기본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실적 인정)
※ 동일한 사업, 동일인에 대해 최대 1.0만 인정
(예시) 기술인A(기본설계)+기술인A(실시설계) ≠1.5
-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 : 0.8
- 타당성조사 : 0.6
○ 용역사업별 계수
- 전력구터널 : 1.0
- 전력구 외 터널 : 양수발전소, 지하철, 철도, 도로, 통신구, 공동구, 상하수도, 수로, 유류비축 등의 터널 : 0.8
○ 터널연장별 계수
- 1,000m이상 : 1.0
- 500m이상~1,000m미만 : 0.8
- 500m미만 : 0.6</td><td>(5.0)
(8.0)</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세부심사기준</th><th></th><th>참가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th></tr>
<tr><td rowspan="3">①
참여기술인</td><td rowspan="3">□ 사업책임기술인</td><td></td><td>단,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동일사업에서 3년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 : 2.0건
2) 동일사업에서 3년이상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 : 0.2건
※ 실적 평가는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정부 및 공공기관 실적만 인정)</td><td></td><td rowspan="3">○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행 해당분야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터널경력은 발주처의 확인내용에 따름. 단, 발송배전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위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경력확인을 우선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경력확인서도 유효함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평가시 “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한하며,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에 한함

○보수공사의 경력은 50%만 인정한다.
○해외근무기간에 대한 실적증명(서식-27,28)

4. 사업책임기술인의 터널 경력기간은 다음과 같이 터널공사 참여기간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터널외 관련경력에 대해서는 터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table><tr><th>터 널 율</th><th>적용계수</th></tr><tr><td>70% 이상</td><td>1.0</td></tr><tr><td>30%이상~70%미만</td><td>0.8</td></tr><tr><td>30%미만</td><td>0.6</td></tr></table>○터널율 = 터널총연장 ÷ 전체노선연장
(터널총연장 : 터널 연장의 총 합계)
단, 연장으로 터널율 산출키 곤란한 사업
터널율 = 터널사업비 ÷ 총사업비
○터널율 환산에 의한 경력산정은 발주처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의 발급내용에 따르며, 발주처 확인자료로 터널 인정은 되지만 터널율 산정불가시 터널율 최저치(30% 미만, 적용계수 0.6)적용
※ 1,000m이상 전력구터널은 터널율 적용 제외

5. 2001년 4월 2일부로 설립된 Kepco 발전자회사는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 참여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4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처리함.
※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2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td></tr>
<tr><td>㉱ 기술능력</td><td>□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평가
<table><tr><th>A</th><th>B</th><th>C</th><th>D</th><th>F</th></tr><tr><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상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서식-29)을 참고하여 용역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A(10%), B(20%), C(40%), D(20%), F(10%)

○등급배분표 참조 (첨부 3)</td><td>(2.0)</td></tr>
<tr><td>㉲ 업무관리능력</td><td>□ 책임기술인 업무관리능력 평가
<table><tr><th>A</th><th>B</th><th>C</th><th>D</th><th>F</th></tr><tr><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

○평가방법 기술능력 평가와 동일</td><td>(1.0)</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세부심사기준</th><th></th><th>참가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th></tr>
<tr><td rowspan="2">①
참여기술인</td><td></td><td></td><td></td><td>[19.0]</td><td></td></tr>
<tr><td>□
분야별책임기술인</td><td>㉮ 등급

㉯ 경력

㉰ 실적
□실적건수는 최근 10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준공실적에 한함</td><td>
<table>
<tr><td>고급기술인 이상</td><td>중급기술인</td><td>초급기술인</td></tr>
<tr><td>4.0</td><td>2.4</td><td>0</td></tr>
</table>
□ 환산경력
<table>
<tr><td>10년이상</td><td>10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
<tr><td>7.0</td><td>6.3</td><td>5.6</td><td>4.9</td><td>4.2</td></tr>
</table>
□ 평가기준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동일(터널율 적용)

□ 환산실적
<table>
<tr><td>10건
이상</td><td>8-10건
미만</td><td>6-8건
미만</td><td>4-6건
미만</td><td>4건
미만</td></tr>
<tr><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
</table>
□ 평가
○ 환산건수 = Σ건당(용역단계별계수×용역사업별계수 × 터널연장별계수 × 분야별가중치)

□ 평가기준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동일</td><td>(4.0)

(7.0)

(8.0)</td><td>○ 분야별 가중치
- 토목구조 : 0.45
- 토질 및 기초 : 0.45
- 발송배전 : 0.1

○ 분야별 책임기술인 환산경력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동일

○ 발송배전은 터널율 적용 제외함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실적건수는 최근 10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1건공사(용역)에 다수의 터널이 있는 경우 가장 긴 터널의 연장을 적용(예 : 1개 노선에 왕복터널이 있는 경우 연장이 긴 한개 터널의 연장으로 적용)</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세부심사기준</th><th></th><th>참가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th></tr>
<tr><td>①
참여기술인</td><td></td><td></td><td></td><td>[14.0]</td><td rowspan="2">1. 환산경력
○분야별 가중치
- 토목구조 : 0.45
- 토질 및 기초 : 0.45
- 발송배전 : 0.1
○분야별 참여기술인 환산경력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동일 (터널율 적용)
○발송배전은 터널율 적용 제외함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 평가
2. 교육훈련 제출서류
○참여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교육 종합집계표(서식-21)
○참여건설기술인 교육 이수실적 (서식-22)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행 증빙서
(발송배전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증빙서 포함)
○평가대상인원=참여기술인 인원 총수
3. 전차용역 제출서류
○전차용역 관련 수행실적 득점집계표 (서식-11)
○전차용역 관련 수행실적(서식-12)
○용역준공실적 증명서
○기술인 참여 증명서 사본
○전차용역 관련 수행실적이라 함은 해당 설계용역사업과 주된공법이 같은 전력구 용역실적(기본설계, 실시설계)을 말함.
※해당 설계용역의 주된공법은 입찰공고시 추정한 상위공법임
○상위공법 : 기계식터널 > 발파식터널> 인력식터널> 개착식전력구> 관로 순임
- 기계식터널 : 세미실드, 실드TBM, 실드, OPEN TBM
- 발파식 터널 : NATM
- 인력식 터널 : 강관압입(HJS 등), 메서실드
- 개착식 전력구 : 개착식전력구 (통신구)
- 관로 : 송·배전관로
4. 터널인정 규모는 구조물내경 Φ 1.6m이상 또는 구조물 내공단면적 2㎡ 이상 터널의 설계용역 실적에 한함</td></tr>
<tr><td></td><td>□
분야별
참여기술인</td><td>㉮ 등급

㉯ 경력

㉰ 실적
□실적건수는 최근 10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준공실적에 한함</td><td>
<table>
<tr><th>중급이상</th><th>초 급</th></tr>
<tr><td>4.0</td><td>3.6</td></tr>
</table>
□ 환산경력
<table>
<tr><th>5년이상</th><th>5년미만
4년이상</th><th>4년미만
3년이상</th><th>3년미만
2년이상</th><th>2년미만</th></tr>
<tr><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able>
□ 평가기준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동일(터널율 적용)
□ 환산실적
<table>
<tr><th>5건이상</th><th>5건미만
4건이상</th><th>4건미만
3건이상</th><th>3건미만
2건이상</th><th>2건미만</th></tr>
<tr><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able>
□ 평가
○환산건수=Σ건당(용역단계별계수 × 용역사업별계수 × 터널연장별계수×분야별가중치)
□ 평가기준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동일</td><td>(4.0)

(5.0)

(5.0)</td></tr>
<tr><td></td><td>□
참여기술인</td><td>참여기술인 교육 및 전차실적(2점)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td><td>□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가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평가
- 2주(70시간) 이상 교육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35시간) 이상 2주(70시간)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해당 설계용역과 주된 공법이 같은 전력구 용역실적(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참여 실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표에 의거 평가함
<table>
<tr><th rowspan="2">해당용역
참여직무</th><th rowspan="2">전차용역
참여경력</th><th colspan="2">배 점</th></tr>
<tr><th>실시설계</th><th>기본설계</th></tr>
<tr><td rowspan="2">사업책임
기술인</td><td>사업책임기술인</td><td>0.5</td><td>0.15</td></tr>
<tr><td>분야별책임기술인</td><td>0.25</td><td>0.08</td></tr>
<tr><td rowspan="2">분야별책임
기술인</td><td>사업책임기술인</td><td>0.5</td><td>0.15</td></tr>
<tr><td>분야별책임기술인</td><td>0.25</td><td>0.08</td></tr>
</table>
○해당용역 참여직무별 전차용역 실적 1건만 인정 (최대0.5점/해당용역 참여직무)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평가</td><td>[2]
(1.0)

(1.0)</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세부심사기준</th><th></th><th>참가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th></tr>
<tr><td rowspan="2">②유사용역수행실적(업체능력)</td><td></td><td></td><td>[15]</td><td rowspan="2">1. 제출서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득점집계표(서식-9)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10)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기타 공인기관 확인증빙서류
2. 유사용역 실적인정범위
○전력구 터널, 전력구외의 터널(양수발전소, 지하철, 도로, 철도, 통신구, 공동구, 상하수도, 수로, 유류시설 등) 설계용역실적에 한함.
3.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의 수행실적 중 공동도급 또는 지분참여 용역실적의 경우, 수행부분(수행 비율이나 지분 또는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하도급 실적인 경우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4. 전차용역 제출서류
○전차용역 관련 수행실적 득점집계표(서식-11)
○전차용역 관련 수행실적(서식-12)
○용역준공실적 증명서
○기술인 참여 증명서 사본
○전차용역 관련 수행실적이라 함은 해당 설계용역사업과 주된공법이 같은 전력구용역실적(기본설계, 실시설계)을 말함.
5. 기타
※ 해당 설계용역의 주된공법은 입찰공고시 추정한 상위공법임
○상위공법 : 기계식터널 > 발파식터널 > 인력식터널 > 개착식전력구 > 관로 순임
- 기계식터널 : 세미실드, 실드TBM, 실드, OPEN TBM
- 발파식 터널 : NATM
- 인력식 터널 : 강관압입(HJS 등), 메서실드
- 개착식 전력구 : 개착식전력구(통신구)
- 관로 : 송·배전관로
※ 터널인정 규모는 구조물내경 Φ 1.6m이상 또는 구조물 내공단면적 2㎡ 이상 터널의 설계용역 실적에 한함
※ 기간기산일 : 공고일 기준</td></tr>
<tr><td>□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사업의 실적(준공이 완료된 실적)등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험(하도급실적 포함)

□ 전차용역 수행실적</td><td>□ 환산건수 = Σ도급수행건당(용역단계별계수×용역사업별계수×터널연장계수)×1.0 + Σ하도급수행건당(용역단계별계수×용역사업별계수×터널연장계수)×(하도급계약금액/해당사업 총용역비)
<table><tr><td>5.0 이상</td><td>4이상 5미만</td><td>3이상 4미만</td><td>2이상 3미만</td><td>2 미만</td></tr><tr><td>14</td><td>12.6</td><td>11.2</td><td>9.8</td><td>8.4</td></tr></table>
□ 평가기준
○ 용역단계별 계수
- 실시설계 : 1.0
-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 0.8
○ 용역사업별 계수
- 전력구 터널 : 1.0
- 전력구 외 터널 : 양수발전소, 지하철, 철도, 도로, 통신구, 공동구, 상하수도, 수로, 유류비축 등의 터널 : 0.8
○ 터널연장별 계수
- 1000m 이상 : 1.0
- 500m~1000m미만 : 0.8
- 500m미만 : 0.6

□ 전차용역수행실적

○ 해당설계용역과 주된공법이 같은 전력구용역(기본설계, 실시설계) 수행 후 경과기간
<table><tr><td>구 분</td><td>3년 미만</td><td>3년이상 5년미만</td><td>5년이상 10미만</td><td>10년 이상</td></tr><tr><td>실 시 설 계</td><td>1.0</td><td>0.8</td><td>0.6</td><td>0</td></tr><tr><td>기 본 설 계</td><td>0.3</td><td>0.24</td><td>0.18</td><td>0</td></tr></table>
※ 전차용역수행실적은 단일용역실적 1건에 대해서만 인정</td><td>(14.0)

(1.0)</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세부심사기준</th><th></th><th>참가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th></tr>
<tr><td rowspan="3">③ 신용도</td><td></td><td></td><td>[10]</td><td rowspan="3">1. 부실벌점 제출서류
○참여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부실벌점(서식-23)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기타 공인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빙서류

2. 제출서류
○용역사업자능력(신용도) 득점집계표(서식-13)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현황표(서식-14)
○회사의 경영내용 및 재정상태 건실도 현황표(서식-15)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원본 대조필)
※ 확인서 1부는 원본 제출

3.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항의 최소한도의 점수는 0점이다.

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이나 기업신용)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td></tr>
<tr><td>□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td><td>□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용역사업자 :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계산)
○참여기술인 :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5점 까지 감점
<table>
<tr><th>누계평균</th><th>1점이상 2점미만</th><th>2점이상 10점미만</th><th>10점이상 15점미만</th><th>15점이상 20점미만</th><th>20점 이상</th></tr>
<tr><td>점수</td><td>-0.2</td><td>-1</td><td>-2</td><td>-3</td><td>-5</td></tr>
</table>
○평가방법
-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을 합산하여 평가
- 참여용역사업자가 공동도급일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은 용역참여 지분(실적)율을 적용</td><td>(7.0)</td></tr>
<tr><td>□재정상태</td><td>□ 신용평가등급
<table>
<tr><th>회사채</th><th>BBB-이상</th><th>BBB-미만 B-이상</th><th>CCC+이하</th><th>미제출</th></tr>
<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
<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
<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td></tr>
</table>
※ 신용평가등급 기준표 참조</td><td>(3.0)</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세부심사기준</th><th></th><th>참가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th></tr>
<tr><td rowspan="3">④ 기술개발및투자실적(업체능력)</td><td></td><td></td><td>[15.0]</td><td rowspan="3">1. 제출서류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집계표(서식-16)
○기술개발실적(서식-17)
○투자실적(최근3년간) (서식-18)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신기술활용실적(서식-26)

2.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합산한 후 평가

3. 건설부분에 한함

4. 신기술 : 건설기술진흥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에 한함.

5. 특허권 설정등록 : 특허법 제87조에 의거 건설부문 특허권 설정이 등록된 것에 한하며, 실용신안도 포함.(실용신안은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6. 건설개발 투자실적은(손익계산서의 연구개발비,교육훈련비 등)은 최근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에 의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서류에 한함.

7. 기술개발 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2조 등에 의한 것이며, 소관 세무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8.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을 반드시 표기

9. 기산일 : 공고일 기준

10.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을 공동수행(또는 지분참여)한 경우 수행부분(수행 비율이나 지분 또는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td></tr>
<tr><td>□기술개발 실적
□해당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등의 기술개발 실적및투자 실적등</td><td>□ 개발실적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 신기술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 가중치
<table><tr><th>구분</th><th>5년미만</th><th>5년이상
10년미만</th><th>10년이상
20년미만</th></tr><tr><td>특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d>(2.0)</td></tr>
<tr><td></td><td>□ 건설기술 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 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table><tr><td>1.50%
이상</td><td>1.50미만
1.25이상</td><td>1.25미만
1.00이상</td><td>1.00미만
0.75이상</td><td>0.75미만
0.50이상</td></tr><tr><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 포함</td><td>(10.0)</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항목</th><th colspan="2">세부심사기준</th><th>참가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th></tr>
<tr><td>④ 기술개발및투자실적(업체능력)</td><td></td><td></td><td>□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설계용역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경과기간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table><tr><td>가중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r><td>건수
(건)</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tr><td>금액
(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table>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td><td>(3.0)</td><td></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세부심사기준</th><th></th><th>참가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th></tr>
<tr><td>⑤ 업무중첩도</td><td></td><td></td><td></td><td>[10.0]</td><td rowspan="4">1. 제출서류
○업무중첩도 득점집계표(서식-19)
○용역 수행 중 업무 중첩기간(서식-20)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 수주실적(입찰공고일 기준하여 수행중인 사업으로 잔여 과업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으로 누락되지 않을 것.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및 사후관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토록 기재
※잔여과업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예정일까지 일수
※연도순으로 기재
2. 평가내용
○용역규모에 따른 환산율
<table><tr><th>구분</th><th>환산율</th></tr><tr><td>10억 이상</td><td>1.0</td></tr><tr><td>5~10억</td><td>0.9</td></tr><tr><td>5억 미만</td><td>0.8</td></tr></table>※ 용역규모 : 추정가격 전체금액
○ 분야별 가중치
- 토목구조 : 0.45
- 토질 및 기초 : 0.45
- 발송배전 : 0.1
3.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5. 자료 오류, 누락 확인시 해당기술인 0점처리
6.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td></tr>
<tr><td></td><td>□ 업무중복도</td><td>□ 책임기술인</td><td>구분 | 100% 미만 | 100% 이상 150% 미만 | 15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점수 | 3.0 | 2.7 | 2.4 | 2.1 | 1.8
○ 평가기준 및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에 용역규모 환산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평가
○ 해당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도 평가대상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적용된 용역으로 한정</td><td>(3.0)</td></tr>
<tr><td></td><td></td><td>□ 분야별 책임기술인</td><td>구분 | 100% 미만 | 100% 이상 150% 미만 | 15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점수 | 4.0 | 3.6 | 3.2 | 2.8 | 2.4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에 용역규모 환산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기타 : 책임기술인 평가에 준함</td><td>(4.0)</td></tr>
<tr><td></td><td></td><td>□ 분야별 참여기술인</td><td>구분 | 200% 미만 | 200%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350% 미만 | 350% 이상
점수 | 2.0 | 1.8 | 1.6 | 1.4 | 1.2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에 용역규모 환산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
-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기타 : 책임기술인 평가에 준함</td><td>(2.0)</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세부심사기준</th><th>참가용역사업자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th></tr>
<tr><td></td><td></td><td>□ 실무기술인</td><td>
<table>
<tr><td>구분</td><td>200% 미만</td><td>200% 이상 250% 미만</td><td>250% 이상 300% 미만</td><td>300% 이상 350% 미만</td><td>350% 이상</td></tr>
<tr><td>점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에 용역규모 환산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
- 기술인이 다수인 경우 기술인별로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분야별 가중치를 적용한 평점을 합산
○ 기타 : 책임기술인 평가에 준함
(1.0)</td><td></td></tr>
<tr><td>⑥ 가점</td><td>□ 가점</td><td>□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td><td>○ 평가기준
- 1%이상 : 0.1점, 2%이상 : 0.2점, 3%이상 : 0.3점
- 신규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0.3</td><td>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용역사업자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td></tr>
<tr><td></td><td></td><td>□ 젊은 기술인 참여</td><td>○ 평가기준
<table>
<tr><td>해당 설계참여 인원비율(해당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해당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td><td>5% 이상</td><td>3% 이상</td><td>1% 이상</td></tr>
<tr><td>가점</td><td>0.2점</td><td>0.15점</td><td>0.1점</td></tr>
</tabl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해당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0.2</td><td></td></tr>
</table>

* 이 평가기준의 적용에 있어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의함

* 평점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할 경우 100점으로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서식-1]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참여 신청서

신고인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설립일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FAX)	
	사 업 내 용	1) 2) 3)		
	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	백만원	총종업원수	명
	기업의 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연간매출액(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명 칭				설립일자		
	주요활동분야	1) 2) 3) 4)					
	직 원	총 원	명	고급 기술인력	명	기 타 기술인력	명
	건 물	소유형태	□ 신고인소유 □ 임차사용	독립여부	□ 독립건물 □ 분리구역	면 적	㎡ (평)
	엔지니어링 설비(500만원이상에 한함)			외 점			
	주요 엔지니어링활동 수행실적			외 건			

참여자격	다른 법령에 의한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자격 보유현황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중인지 여부 (해당란에 v 표시)	□ 입찰참가 제한기간중이 아님 □ 입찰참가 제한기간중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 여부(해당란에 v 표시)	□ 조건충족 □ 조건미비

신청인의 최근 10년간 엔지니어링사업수행 경험(유사용역 5년간)		
총 수행건수·계약금액 (도급/하도급)	건 (/)	백만원 (/)
유사사업수행건수·계약금액 (도급/하도급)	건 (/)	백만원 (/)

<table>
<tr><td colspan="6">신청인의 최근 10년간 신용상태</td></tr>
<tr><td colspan="4">납기이행여부, 납품후 하자처리 회수, 계약중단회수, 우수용역사업자 지정여부 상훈실적 등</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td></tr>
<tr><td colspan="2">총 보유 기술인력
(전담부서)</td><td>명</td><td colspan="2">해당사업관련 보유기술 인력</td><td>명</td></tr>
<tr><td colspan="2">해당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
(특히,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등)</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해당사업의 전단계 용역수행실적</td><td colspan="2">건</td><td colspan="2">백만원</td></tr>
<tr><td colspan="2">해당사업과 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용역수행실적</td><td colspan="2">건</td><td colspan="2">백만원</td></tr>
<tr><td colspan="6">사업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td></tr>
<tr><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최 종 학 력</td><td colspan="2"></td><td>최 종 학 위</td><td></td><td></td></tr>
<tr><td>자격증 보유현황</td><td>자격
명칭</td><td></td><td>취 득 일 자</td><td></td><td></td></tr>
<tr><td>근무처</td><td></td><td>직 위</td><td></td><td>근무기간</td><td>월</td></tr>
<tr><td colspan="2">최근 10년간 총 용역수행실적</td><td colspan="2">건</td><td colspan="2">백만원</td></tr>
<tr><td colspan="2">최근 5년간 해당사업 유사용역실적</td><td colspan="2">건</td><td colspan="2">백만원</td></tr>
</table>

업무정지중인지의 여부 (해당란에 v 표시)	□ 정지중이 아님 □ 정지중임	발주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충족 □ 조건미비

사업책임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사업의 명칭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기간	참여직위	발주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인적사항 및 경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최종학위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 명칭		취득일자		
근무처		직위		근무기간	월
최근 10년간 총용역 수행실적		건		백만원	
최근 5년간 해당사업 유사용역실적		건		백만원	

업무정지중인지의 여부 (해당란에 v 표시)	□ 정지중이 아님 □ 정지중임	발주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충족 □ 조건미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수행중인 업무량					
사업의 명칭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기간	참여직위	발주처

해당사업에 필요한 적정기술인력 보유정도				
구 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된 월수				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참여를 위와 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 국 전 력 공 사 사 장 귀하

[서식-2]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 득점표

평 가 분 야		※ 평 가 항 목		획득점수	비 고
분 야 별	배 점	항 목	배 점		
1. 자격심사	평가여부 결정	① 입찰참가제한 ② 재정상태 ③ 사업수행의 자격 ④ 조건의 충족			
2. 기술능력	100	① 참여기술인 능력 □ 등 급 □ 경 력 □ 실 적 □ 기술능력 □ 업무관리능력 □ 교육훈련 □ 전차용역수행실적 □ 업무중첩도 ② 업체능력 □ 유사용역수행실적 □ 신용도(부실벌점 포함)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0) 11 16 18 2 1 1 1 10 (40) 15 10 15		
총 계			100		

[서식-3]

자격심사분야 평가 집계표

구 분	평 가	※ 한 전 확 인 란		비 고
		평 가	확 인	
① 입찰참가제한	□ 평가중단 □ 평가계속			
② 재정상태	□ 평가중단 □ 평가계속			
③ 사업수행의 자격	□ 평가중단 □ 평가계속			
④ 조건의 충족	□ 평가중단 □ 평가계속			
합 계				

※ 한전확인란은 신청자 기재 불요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서식-4]

기술능력분야 득점 집계표

구 분	배 점	득 점	※ 한 전 확 인 란		비 고
			평 가	확 인	
① 참여기술인 능력	(60)				
□ 등 급	11				
□ 경 력	16				
□ 실 적	18				
□ 기술능력	2				
□ 업무관리능력	1				
□ 교육훈련	1				
□ 전차용역수행능력	1				
□ 업무중첩도	10				
② 업체능력	(40)				
□ 유사용역수행실적	15				
□ 신용도	10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합 계					

※ 한전확인란은 신청자 기재 불요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서식-5]

참여기술인 능력(경험) 득점집계표

구 분	배 점	득 점	※ 한 전 확 인 란		비 고
			득 점	확 인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5)				
- 등 급	3				
- 경 력	4				
- 실 적	5				
- 기술능력	2				
- 업무관리능력	1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4				
- 경 력	7				
- 실 적	8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4				
- 경 력	5				
- 실 적	5				
◦ 참여기술인	(2)				
- 교육훈련	1				
- 전차용역수행실적	1				
◦ 업무중첩도	(10)				
- 사업책임기술인	3				
- 분야별책임기술인	4				
- 분야별참여기술인	2				
- 실무기술인	1				
합 계	60				

※ 한전확인란은 신청자 기재 불요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서식-6]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

성 명	연령	생년월일	학 력		전공	자 격 증		경 력		소속(본사,지사,타사 및 현재직위)	입사일
			최종학교	학위(취득일)		종류	취득일	총경력	환산경력		

"주" 1. 본 과업 참여직위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2. 자격, 학력, 경력 등은 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3.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행 해당분야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단, 발송배전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위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경력확인을 우선으로 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한 경력확인서도 유효함

4. 환산경력은 서식-7에 의하여 산출함

[서식-7]

참여기술인의 환산경력

참여기간 (참여일)	사업명 발주자	공사종류 공법	담당업무 직 위	참여일	환산 계수	터널율	환산경력	비 고
합 계							일	

"주"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발행 해당업무 참여일수에 환산계수 및 터널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단,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경력중 터널경력사항은 해당발주처 발행 경력증명서나 용역이행실적증명(확인)서(서식-24,25)를 첨부 또는 발주처의 터널존재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터널로 인정되며, 발주처확인외의 기타 객관적인 방식(터널준공 표지판 컬러사진)으로 터널존재 확인시에 한하여 해당경력 기간의 30%를 터널경력으로 인정한다. 또한 터널인정 경우에도 노선총연장, 터널총연장, 공법 및 단면적 또는 총사업비와 터널사업비등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터널율 산정이 불가한 경우 터널율 최저치(30% 미만, 적용계수 0.6)를 적용함.

[서식-8]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실적

성 명					본과업 참여직위			
구분	사업명	터 널 연 장	단면규모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참여당시			발주처
					소속회사	직위	기술인등급	
계	총 건			년 개월				

"주" 1.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해 개인별로 작성하되 구분란에는 해당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작성

2. 유사용역실적 인정범위

가. 전력시설물터널(전력구 터널, 양수발전소 터널) 및 기타터널(지하철, 도로, 철도, 통신구, 공동구, 상하수도, 수로 유류시설 등의 터널) 등과 유사한 터널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의함.

나. 구조물 내경 Φ1.6m 이상 또는 구조물 내공단면적 2.0㎡ 이상 터널관련 실적에 한함

다. 해외실적 포함.

3. 유사용역 실적은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로 제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0년간 준공분에 한함.

4. 유사용역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 대상분야가 아닌 경우는 기타 공인기관 발행 증빙서류에 의해 평가함)

5.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식-9]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득점집계표

구 분	득 점	※ 한 전 확 인 란		비 고
		득 점	확 인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건 수				
합 계				

※ 한전확인란은 신청자 기재 불요

붙임서류 : 유사용역사업 수행 실적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서식-10]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1. 타당성 조사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사업의 분야별책임자		비 고
					책임분야	성 명	
총 건							

2. 기본설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사업의 분야별책임자		비 고
					책임분야	성 명	
총 건							

3. 실시설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사업의 분야별책임자		비 고
					책임분야	성 명	
총 건							

"주" 1. 수행실적은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준공분에 한함.

2. 사업개요란에는 공법, 연장, 단면규모,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재내용이 불분명할 시는 실적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해당회사의 도급금액을 별도 기재한다. (증빙서류 첨부)

4.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5. 발주기관이 발급한 준공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법, 연장, 단면규모,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6.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인정범위

가. 전력구 터널, 전력구외 터널(지하철, 도로, 철도, 통신구, 공동구, 상하수도, 수로, 유류시설, 양수발전소 등)의 설계용역 실적에 의함.

나. 터널의 경우 구조물 내경 Φ1.6m 이상 또는 구조물 내공단면적 2㎡ 이상 설계용역 실적에 한함

다. 해외실적 포함.

[서식-11]

전차용역 관련 수행실적 득점집계표

구 분	득 점	※ 한 전 확 인 란		비 고
		득 점	확 인	
□ 전차용역 관련실적 ◦ 용역사업자 ◦ 참여기술인				
합 계				

※ 한전확인란은 신청자 기재 불요

붙임서류 : 유사용역사업 수행 실적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서식-12]

전차용역 관련 수행실적

1. 용역사업자

구 분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개요	발 주 처	주된 공법	비 고
		계약	준공				

2. 참여기술인

성 명				본 과업 참여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기간		주된 공법 (연장 및 규모)	참여기간	책임기술인구분 (사업/분야별)	비고
		계약	준공				

"주" 1. 구분란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작성.

2. 해당없는 회사는 "없음" 기재.

3. 전차용역 관련 수행실적이라 함은 해당 설계용역사업과 주된 공법이 같은 전력구 용역실적(기본설계, 실시설계)을 말함.

※ 해당 설계용역의 주된 공법은 입찰공고시 추정한 상위공업임.

- 상위공법 : 기계식터널〉 발파식터널〉 인력식터널〉 개착식전력구〉 관로 순임.

4. 구조물 내경 Φ1.6m 이상 또는 구조물 내공단면적 2㎡ 이상 터널의 설계용역 실적에 한함

5.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전차용역 관련 수행실적 기간산정은 용역 준공년도 월부터 입찰공고 연도 월 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월 미만은 삭제함.

[서식-13]

용역사업자 능력(신용도) 득점집계표

구 분	득 점	※ 한 전 확 인 란		비 고
		득 점	확 인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용역사업자 - 참여기술인 ◦ 설계용역과 관련한 부실벌점 현황 - 용역사업자 - 참여기술인 ◦ 재정상태 - 신용평가 등급				
합 계				

※ 한전확인란은 신청자 기재 불요

붙임서류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표
회사의 경영내용 및 재정상태 건실도 현황표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서식-1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표

용역명	제재년월일	제재조치 관련기관	제재받은내용		참여기술인			비 고
			기 간	사 유	분 야	성 명	참여기간	

"주" 1. 용역사업자는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2. 참여기술인은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기간과 내용을 기재한다.

3. 해당없는 회사는 "없음" 기재.

※ 1, 2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과 취소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서식-15]

회사의 경영내용 및 재정상태 건실도 현황표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설립 년도		자 본 금	

2.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OO 년	비 고
신용평가등급		

붙임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원본 대조필)

※ 확인서 1부는 원본제출

[서식-16]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집계표

구 분	총건수 및 비율	※한전확인란		비 고
		득점	확인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실적 ◦ 투자실적 ◦ 활용 실적				

※ 한전확인란은 신청자 기재 불요

붙임서류 :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서식-17]

기술개발 실적

일련번호	연 도	기술개발 및 특허권 설정 등록건명	내 용	등록번호	비 고
계		건			

"주"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2.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구성원별 용역참여지분율(비고란에 기재)

3. 기술의 종류에는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을 기재

4.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첨부

[서식-18]

투자실적

일련번호	연 도	건 명	용역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액	비 율
계		건	원	원	

"주' 1. 기간기산일 : 기술개발 실적은 공고일 기준,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3년간 실적

2. 기술개발 투자액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실적을 말하며, 투자실적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술내용 기재. 단,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을 반드시 기재

3. 국토교통부장관의 신기술 등록증 및 특허청장의 특허증 등 증명서 첨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부문에 한함.

5.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기재

6.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7.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8. 제출서류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조, 제12조 등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 하여 기재

[서식-19]

업무중첩도 득점집계표

구 분	득 점	※ 한 전 확 인 란		비 고
		득 점	확 인	
□ 업무중첩도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분야별참여기술인 ◦ 실무기술인				

※ 한전 확인란은 신청자 기재 불요

붙임서류 : 용역수행중 실적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서식-20]

용역 수행중 용역업무 중첩기간

<table>
<tr><td rowspan="2">용역명</td><td rowspan="2">사업
개요</td><td rowspan="2">용역기간
(년월-년월)</td><td rowspan="2">계약금액
(천 원)</td><td rowspan="2">중첩기간
(개월)</td><td rowspan="2">환산
계수</td><td rowspan="2">환산
중첩
기간</td><td rowspan="2">발주처</td><td rowspan="2">사업책임
기술인
성명</td><td colspan="2">분야별책임기술인</td></tr>
<tr><td>책임분야</td><td>성 명</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용역명</td><td rowspan="2">사업
개요</td><td rowspan="2">용역기간
(년월-년월)</td><td rowspan="2">계약금액
(천 원)</td><td rowspan="2">중첩기간
(개월)</td><td rowspan="2">환산
계수</td><td rowspan="2">환산
중첩
기간</td><td rowspan="2">발주처</td><td colspan="2">분야별참여
기술인</td><td colspan="2">실무기술인</td></tr>
<tr><td>참여
분야</td><td>성 명</td><td>참여
분야</td><td>성 명</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12"></td></tr>
</table>

"주" 1.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수주실적(평가자료 제출공고일 기준하여 수행중인 사업으로 잔여과업이 3개월이상인 사업)으로 누락되지 않을 것.

※ 연도순으로 기재

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기타 공인기관 발행 증빙서류

3.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해당회사의 도급금액을 원도급금액과 구분하여 별도 기재하고 발주처의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

4.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일 경우 원도급자,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처의 승인서 사본을 첨부

[서식-21]

참여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교육 종합집계표

구 분	득 점	※ 한전 확인란		비 고
		득 점	확 인	
1. 참여기술인교육훈련 가. 교육훈련 2. 전차용역관련 가. 용역사업자 나. 참여기술인 3.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가. 부실벌점				

붙임서류 : 교육훈련 (서식-22)

전차용역관련 (서식-11 및 서식-12)

참여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부실벌점(서식-23)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기타공인기관 발행 증빙 서류

용역준공실적 증명서

기술인 참여 증명서 사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서식-22]

참여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부
		년월일	년월일		

붙임서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기타공인기관 발행 증빙 서류

[서식-23]

참여용역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부실벌점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개요	부실벌점			발주처	비 고
			참여용역 사업자	참여 기술인	누계		

붙임서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기타공인기관 발행 증빙 서류

[서식-24]

경 력 확 인 서

인적사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근무처 경력

소속회사	회 사 명			
	업 종		면허(또는 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 사 일		퇴 사 일	

2. 기술경력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①터널 사업비	②총 사업비	③노선 총연장	④터널 총연장	⑤터널 내공단면적	⑥터널 공법	⑦담당 업무
1	~								
2	~								
3	~								
4	~								
5	~								
6	~								
7	~								

위와 같이 기술인에 대한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대표자) 인

(주) 1. 공공기관 출신용 양식임

2. 철도, 도로, 전력구등과 같은 노선형 공사는 ①, ②항을 생략할 수 있으며,

3. 단지조성공사에 일부터널공사가 있는 경우와 같은 공사는 ③항 대신 ①, ②항을 명기해야함.

[서식-25]

실 적 증 명(확인) 서

신청인	용역사업자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계약금액			

사업명		구 분	설계( ) 건설사업관리( ) 공사( ) 기타( )

사 업 개 요

① 총사업비 : ₩ ② 터널사업비 : ₩
③ 노선총연장 : L= ④ 터널총연장 : L=

터널명	터널연장 (m)	터널내공단면적(㎡) 또는 구조물내경(m)	터널공법	터널명	터널연장 (m)	터널내공단면적(㎡) 또는 구조물내경(m)	터널공법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 율	실적	
				%	₩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공공기관 출신용 양식임
2. 철도, 도로, 전력구등과 같은 노선형 공사는 ①, ②항을 생략할 수 있으며,
3. 단지조성내에 일부터널이 속해 있는 경우와 같은 공사는 ①, ②항을 명기해야하고 ③항을 생략할 수 있음.
4. 이 양식은 발주청의 양식 또는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평가에 관계되는 소요 내용은 모두 수록하여야 함.

[서식-25-1]

※ 해당 양식은 **전력구 기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용 서류**로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용 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 기본설계 심의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참여한 사실을 확인함**

전력구 기본설계 참여기술인 현황

신청인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	

참여 사업	사업명	
	발주청	
	용역기간	
	공사종류	공법
	공사(용역)개요 (70자이내 공란포함)	
	공사(용역)금액 (단위 : 백만원)	

기술경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서명 또는(인)
1									
2									
3									
4									
5									

위와 같이 당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기술인에 대한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인・허가기관) 직인

유의사항

1.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및 책임정도 기재요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3 제3호 및 제4호를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발주청 확인은 해당기관의 장(건설공사와 관련한 실적관리 및 확인 권한 등을 재무관, 경리관 또는 계약담당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공무원 포함)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6]

신 기 술 활 용 실 적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① 일련번호	② 공사명	③ 발주자명	※④ 업태분류	※⑤ 발주자분류	※⑥ 기술분야	※⑦ 지역	※⑧ 계약형태	※⑨ 계약관계	※⑩ 활용형태	⑪ 계약연월일	⑫ 착공연월일	⑬ 준공연월일	⑭해당연도계약액또는이월금액	⑮해당연도활용금액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천원	

구비서류

1. 건설공사의 경우
   가. 발주청이 발행하는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작성요령

1. 일련번호는 신기술로 기재합니다.
2. ※표시가 있는 난은 뒤쪽의 해당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3. 전년도 미기성액부터 작성하고, 해당연도 계약분을 계약일자순으로 기재하고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4. 해당연도 활용금액은 발주자 공급자재액을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서식-27]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지분율 %)		
5) 신 청 자 (대 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 표 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용 역 명	
발 주 처	

위 내용을 증명함.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서식-28]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발 주 처	
공 사 명	

위 내용을 증명함.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서식-29] ※ 원본 1부 및 사본 9부 제출(원본만 업체명 기입)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예시)

구분	배점	지 표
A	1.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B	0.9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C	0.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해당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D	0.7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F	0.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해당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등급별 배분표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의 항목에 대한 상대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2. 신청업체 수에 따른 상대평가 총득점 순위별 등급 배분

가. 등급배분 : 등급별 배분은 아래의 "나"항에 의거 신청업체 수에 따라 'A', 'B', 'C', 'D', 'F'로 강제 배분하여야 한다.

나. 신청업체 수에 따른 평가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A	B	C	D	F		A	B	C	D	F
2,(3)	1	1	(1)			14	1	3	6	3	1
4	1	2	1			15	2	3	6	3	1
5	1	2	1	1		16	2	3	6	3	2
6	1	2	1	1	1	17	2	3	7	3	2
7	1	2	2	1	1	18	2	4	7	3	2
8	1	2	3	1	1	19	2	4	7	4	2
9	1	2	3	2	1	20	2	4	8	4	2
10	1	2	4	2	1	21	2	4	9	4	2
11	1	2	5	2	1	22	2	5	9	4	2
12	1	3	5	2	1	23	2	5	9	5	2
13	1	3	5	3	1	24	2	5	10	5	2